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 1267호

2015년 11월 6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공고 제2015- 1672호	2015. 10월 수시분 및 8월 독촉분 지방소득세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 공고 제2015- 1683호	11월 취득세 공시송달	6
○ 공고 제2015- 1684호	도로지정공고	8
○ 공고 제2015- 1685호	장기미반환 건설기계 공매 공고(2차)	9
○ 공고 제2015- 1692호	도시계획시설(능골지구 소2-2호선) 보상계획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14
○ 공고 제2015- 1698호	[능골지구 소2-1호선 도로개설공사] 보상계획열람 공시송달 공고	16
○ 공고 제2015- 1700호	세외수입 체납자 공공기록정보 등록 사전 예고 통지 및 체납액 납부독촉 공시송달(공고)	18
○ 공고 제2015- 31호	제22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소집공고	19
○ 공고 제2015- 3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
○ 공고 제2015- 3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32
○ 공고 제2015- 3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38
○ 공고 제2015- 35호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기예관한규정 폐지규정(안) 입법예고	50
○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15- 74호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54
○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15- 75호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55
○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15- 76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	56
○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15- 77호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57
○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15- 78호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58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홍보미디어실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5-1672호

공 시 송 달

성 명 문**대 외 169

주소 또는 거소 내역별첨

서 류 의 명 칭 2015년 10월 수시분 및 8월 독촉분 지방소득세

위 서류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로 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인 불명”, “수취인 미거주”, “이사불명”, “반송함 장기방치”, “국외이주”, “직권말소” 및 “폐업” 등으로 반송 처리되어 송달 불능인 바, 당초 납기 2015.10.31.일을 2015.11.30일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하오니 기한내 금융기관 및 전자납부 등으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11. 2 .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연번	납세번호	납세자번호	개인(법인)명	세액합계	공고사유
1	1400012015102690021671	600807-*****	문**대	350,450	수령인없음고지서미송달
2	1400022015102530000588	520408-*****	최**옥	399,360	수령인없음고지서미송달
3	1400022015102550000582	600224-*****	조**실	420,920	수령인없음고지서미송달
4	1400022015102570000579	660325-*****	엄**란	1,038,890	수령인없음고지서미송달
5	1400022015102650000544	620314-*****	김**환	1,123,470	수령인없음고지서미송달
6	1400022015102690000563	641205-*****	이**경	866,310	이사감고지서미송달
7	1400032015102510000891	214811-*****	(주)총**보**한**유**사**단	926,740	수령인없음고지서미송달
8	1400032015102510000892	214811-*****	(주)총**보**한**유**사**단	696,480	수령인없음고지서미송달
9	1400032015102510000893	214811-*****	(주)총**보**한**유**사**단	757,270	수령인없음고지서미송달
10	1400032015102710000907	120111-*****	(주)신**로**스	686,320	기타고지서미송달
11	1400042015102510008111	720722-*****	김**현	14,74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고지서미송달
12	1400042015102510008141	124611-*****	(주)대**티**씨	57,76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고지서미송달
13	1400042015102510008155	680303-*****	손**호	4,16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고지서미송달
14	1400042015102510008171	120111-*****	주**회**건**사**무**아** 엔**그**	77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고지서미송달
15	1400042015102510008293	630924-*****	조**숙	88,54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고지서미송달
16	1400042015102510008322	110111-*****	(주)제**케**에**	722,100	기타고지서미송달
17	1400042015102510008380	120111-*****	삼**메**(주)	4,64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고지서미송달
18	1400042015102510008666	580805-*****	최**근	4,32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고지서미송달
19	1400042015102510008953	120111-*****	햇**산**개**(주)	59,89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고지서미송달
20	1400042015102510008960	120111-*****	(주)성**중**건**사**무**	73,94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고지서미송달
21	1400042015102510008968	120111-*****	(주)건**티**씨	11,94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고지서미송달
22	1400042015102510009006	120111-*****	(주)대**하**텍	35,06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고지서미송달
23	1400042015102510009080	120111-*****	(주)유**	70,44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고지서미송달
24	1400042015102510009118	120111-*****	(주)성**건**사**무**	43,29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고지서미송달
25	1400042015102510009355	591110-*****	한**옥	585,970	이사감고지서미송달
26	1400042015102510009447	480520-*****	정**능	6,66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고지서미송달
27	1400042015102510009461	135511-*****	주**회**정**	38,35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고지서미송달
28	1400042015102510009486	110111-*****	에**디**네**위**	1,95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고지서미송달
29	1400042015102510009504	570627-*****	이**숙	52,73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고지서미송달
30	1400042015102521008098	781130-*****	조**우	1,67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고지서미송달
31	1400042015102521008108	641009-*****	김**미	1,87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고지서미송달
32	1400042015102521008109	641009-*****	김**미	73,06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고지서미송달
33	1400042015102521008333	730708-*****	박**선	23,99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고지서미송달
34	1400042015102521008522	651224-*****	유**우	29,71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고지서미송달
35	1400042015102521009004	120111-*****	(주)우**글	21,67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고지서미송달
36	1400042015102521009133	120111-*****	주**회**씨**에**글**별	1,76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고지서미송달
37	1400042015102521009134	120111-*****	주**회**씨**에**글**별	16,04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고지서미송달
38	1400042015102522008920	120111-*****	신**메**(주)	2,99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고지서미송달
39	1400042015102522008921	120111-*****	신**메**(주)	116,46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고지서미송달
40	1400042015102522009140	120111-*****	주**회****스**리**	3,29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고지서미송달
41	1400042015102530008277	711002-*****	이**근	4,15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고지서미송달
42	1400042015102530008702	790125-*****	이**미	47,91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고지서미송달
43	1400042015102530009155	120111-*****	주**회****인**용	7,88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고지서미송달
44	1400042015102530009521	120111-*****	주**회****덤**	4,98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고지서미송달
45	1400042015102530009522	120111-*****	주**회****덤**	10,16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고지서미송달
46	1400042015102530009523	120111-*****	주**회****덤**	15,62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고지서미송달
47	1400042015102540008292	180111-*****	플**스**보**솔(주)	2,13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고지서미송달
48	1400042015102550008672	780530-*****	김**중	6,59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고지서미송달
49	1400042015102550008673	780530-*****	김**중	119,52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고지서미송달
50	1400042015102550008978	111321-*****	(**)**국**각**애**연**회	91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고지서미송달
51	1400042015102550009035	120111-*****	(주)서**	340,500	수령인없음고지서미송달
52	1400042015102550009095	120111-*****	(주)거**	1,40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고지서미송달
53	1400042015102551008186	120111-*****	에**엔**	5,27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고지서미송달
54	1400042015102551008755	351127-*****	이**형	1,63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고지서미송달
55	1400042015102551008932	120111-*****	(주)목**	217,76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고지서미송달
56	1400042015102551009086	120111-*****	(주)엠**스**보**신	55,18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고지서미송달
57	1400042015102551009135	120111-*****	주**회**보**오**스	99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고지서미송달
58	1400042015102560008773	730220-*****	정**만	18,32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고지서미송달
59	1400042015102570008703	560803-*****	김**덕	1,44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고지서미송달
60	1400042015102581008349	680910-*****	정**섭	8,08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고지서미송달
61	1400042015102582008270	120111-*****	주**중**관**(주)	309,260	수령인없음고지서미송달
62	1400042015102582008300	700209-*****	유**동	15,64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고지서미송달
63	1400042015102583008332	690401-*****	김**수	350,150	기타고지서미송달
64	1400042015102650008620	740910-*****	황**영	20,85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고지서미송달

65	1400042015102650008782	910114-*****	한**혁	23,44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고지서미송달
66	1400042015102660009259	781221-*****	한**정	360,650	수령인없음고지서미송달
67	1400042015102690008402	134911-*****	티**지**업**발*주**회**	3,20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고지서미송달
68	1400042015102690008403	134911-*****	티**지**업**발*주**회**	25,21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고지서미송달
69	1400042015102690008404	134911-*****	티**지**업**발*주**회**	47,36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고지서미송달
70	1400042015102690008771	730528-*****	김**운	19,40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고지서미송달
71	1400042015102690009244	700724-*****	이**숙	363,500	기타고지서미송달
72	1400042015102690009357	580923-*****	이**진	14,06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고지서미송달
73	1400042015102690009358	580923-*****	이**진	63,39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고지서미송달
74	1400042015102700008472	840601-*****	정**진	45,04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고지서미송달
75	1400042015102710008221	120111-*****	(주)대**일**트**	7,16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고지서미송달
76	1400042015102710008317	110111-*****	(주)두**샘	13,51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고지서미송달
77	1400042015102710008318	110111-*****	(주)두**샘	20,81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고지서미송달
78	1400042015102710008319	110111-*****	(주)두**샘	159,03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고지서미송달
79	1400042015102710008520	531208-*****	신**욱	45,85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고지서미송달
80	1400042015102710008643	690127-*****	이**주	2,35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고지서미송달
81	1400042015102710008776	810719-*****	김**원	229,22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고지서미송달
82	1400042015102710008907	120111-*****	천**기**(주)	92,48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고지서미송달
83	1400042015102710008908	120111-*****	천**기**(주)	22,642,200	기타고지서미송달
84	1400042015102710009090	120111-*****	스**로**	65,69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고지서미송달
85	1400042015102710009541	191311-*****	주**회****에**	14,08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고지서미송달
86	1400042015102800008073	134111-*****	주**회**한**벤**	37,88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고지서미송달
87	1400042015102800008075	131111-*****	아**옴**스*주**회**	19,53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고지서미송달
88	1400042015102800008298	110111-*****	주**회**한**경**인**원	127,98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고지서미송달
89	1400042015102800008299	110111-*****	주**회**한**경**인**원	180,79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고지서미송달
90	1400042015102800008301	760706-*****	이**은	1,22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고지서미송달
91	1400042015102800008320	631129-*****	조**주	313,410	기타고지서미송달
92	1400042015102800008375	124611-*****	(주)위**2*	74,37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고지서미송달
93	1400042015102800008376	124611-*****	(주)지**디**유**크**리**	65,63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고지서미송달
94	1400042015102800008463	135811-*****	(주)에**비**스**	319,690	이사감고지서미송달
95	1400042015102800008526	590310-*****	임**희	17,35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고지서미송달
96	1400042015102800008540	710420-*****	이**필	67,00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고지서미송달
97	1400042015102800008631	641103-*****	유**동	17,51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고지서미송달
98	1400042015102800008694	790401-*****	김**두	14,71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고지서미송달
99	1400042015102800008745	620224-*****	강**용	17,52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고지서미송달
100	1400042015102800008772	730427-*****	김**정	3,70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고지서미송달
101	1400042015102800008905	120111-*****	(주)동**중**설**계	179,42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고지서미송달
102	1400042015102800008977	120111-*****	동**이**씨(주)	167,56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고지서미송달
103	1400042015102800009009	120111-*****	(주)아**계**시**	45,23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고지서미송달
104	1400042015102800009015	120111-*****	(주)뷰**코**	146,16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고지서미송달
105	1400042015102800009042	120111-*****	(주)티**이**지	3,49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고지서미송달
106	1400042015102800009043	120111-*****	(주)하**솔**텍	389,840	이사감고지서미송달
107	1400042015102800009057	120111-*****	(주)진**앤**디	7,26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고지서미송달
108	1400042015102800009073	120111-*****	(주)아**앤**크**로**	724,550	이사감고지서미송달
109	1400042015102800009074	120111-*****	(주)아**앤**크**로**	2,936,510	이사감고지서미송달
110	1400042015102800009121	120111-*****	(주)금**테**	144,00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고지서미송달
111	1400042015102800009381	590201-*****	이**근	9,84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고지서미송달
112	1400042015102800009382	590201-*****	이**근	37,03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고지서미송달
113	1400042015102800009408	120111-*****	(주)대**목**공**	605,650	수령인없음고지서미송달
114	1400042015102800009458	135511-*****	(주)포**스**이**	49,03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고지서미송달
115	1400042015102800009545	230111-*****	(주)경**기**	422,380	이사감고지서미송달
116	1400012015082510010598	860228-*****	박**현	340,870	수령인없음고지서미송달
117	1400012015082521010355	650302-*****	홍**성	346,980	수령인없음고지서미송달
118	1400012015082521010359	690125-*****	김**철	4,001,120	수령인없음고지서미송달
119	1400012015082521010417	770218-*****	이**훈	347,590	수령인없음고지서미송달
120	1400012015082521010490	740910-*****	황**영	210,66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고지서미송달
121	1400012015082521010658	580706-*****	송**자	3,776,100	수령인없음고지서미송달
122	1400012015082522010480	660111-*****	정**순	349,810	수령인없음고지서미송달
123	1400012015082522010631	721128-*****	강**진	1,731,210	수령인없음고지서미송달
124	1400012015082530017470	781128-*****	장**수	593,610	수령인없음고지서미송달
125	1400012015082550010438	540328-*****	최**훈	393,020	수령인없음고지서미송달
126	1400012015082550010641	680202-*****	박**규	478,210	수령인없음고지서미송달
127	1400012015082550010644	570904-*****	박**임	6,516,900	기타고지서미송달
128	1400012015082551010378	810713-*****	김**준	1,279,280	이사감고지서미송달
129	1400012015082551010506	611215-*****	정**남	385,260	수령인없음고지서미송달
130	1400012015082560010708	630127-*****	이**길	4,083,870	수령인없음고지서미송달

131	1400012015082570010699	730304-*****	원**현	12,494,400	수령인없음고지서미송달
132	1400012015082581010733	740303-*****	김**환	8,466,890	수령인없음고지서미송달
133	1400012015082581017444	690412-*****	김**석	2,229,730	수령인없음고지서미송달
134	1400012015082582010698	741223-*****	장**훈	1,512,510	수령인없음고지서미송달
135	1400012015082582010709	620517-*****	김**영	5,744,380	수령인없음고지서미송달
136	1400012015082650010435	740530-*****	김**태	907,860	수령인없음고지서미송달
137	1400012015082660010434	561025-*****	김**복	552,380	수령인없음고지서미송달
138	1400012015082660010714	810515-*****	김**성	761,860	수령인없음고지서미송달
139	1400012015082690010685	740504-*****	고**열	2,943,890	수령인없음고지서미송달
140	1400012015082700010407	770217-*****	유**규	1,605,720	수령인없음고지서미송달
141	1400012015082700010686	780329-*****	정**준	3,595,660	수령인없음고지서미송달
142	1400012015082700017433	561212-*****	홍**영	1,061,050	수령인없음고지서미송달
143	1400022015082510000476	570225-*****	문**화	455,090	수령인없음고지서미송달
144	1400022015082510000491	730219-*****	황**길	312,720	수령인없음고지서미송달
145	1400032015082510000837	120111-*****	(주)태**건**사**무**	403,660	기타고지서미송달
146	1400032015082510000854	120111-*****	(주)성**하**정	1,746,770	이사감고지서미송달
147	1400032015082550000867	120111-*****	주**회**일**사**들	21,524,080	이사감고지서미송달
148	1400032015082551000862	120111-*****	롯데**소***(주)	6,466,040	수령인없음고지서미송달
149	1400032015082551000863	120111-*****	진**산***(주)	9,702,390	기타고지서미송달
150	1400032015082551000864	120111-*****	주**회**형**토**	13,20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고지서미송달
151	1400032015082700000852	120111-*****	에**개**	26,450,920	기타고지서미송달
152	1400032015082710000848	120111-*****	(주)벨**체	82,78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고지서미송달
153	1400042015082510006804	124611-*****	(주)대**티**씨	59,47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고지서미송달
154	1400042015082510006861	120111-*****	페**물**동**거**영**구(주)	8,31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고지서미송달
155	1400042015082510007164	120111-*****	햇**산**개***(주)	61,67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고지서미송달
156	1400042015082510007247	120111-*****	주**회****제**솔**선	4,39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고지서미송달
157	1400042015082510007256	120111-*****	주**회****담	31,44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고지서미송달
158	1400042015082510007298	284211-*****	(주)신**	8,53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고지서미송달
159	1400042015082521006712	120111-*****	(주)이**세**믹	3,42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고지서미송달
160	1400042015082522006937	120111-*****	주**중**관***(주)	327,770	수령인없음고지서미송달
161	1400042015082530007190	120111-*****	(주)골**원	30,12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고지서미송달
162	1400042015082551006852	120111-*****	에**앤**	6,04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고지서미송달
163	1400042015082551007193	120111-*****	토**토**캡*주**회**	84,90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고지서미송달
164	1400042015082700006871	120111-*****	에**개**	17,46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고지서미송달
165	1400042015082710006802	120111-*****	수**전***(주)	343,010	수령인없음고지서미송달
166	1400042015082710006928	580815-*****	양**국	8,31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고지서미송달
167	1400042015082710007230	120111-*****	(주)야**스	3,16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고지서미송달
168	1400042015082710007259	120111-*****	주**회** *앤**	6,02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고지서미송달
169	1400042015082800006724	134111-*****	주**회**한**벤**	39,24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고지서미송달
170	1400042015082800007185	120111-*****	(주)티**이**지	3,59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고지서미송달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5-1683호

취,등록면허세 고지서 공시송달

성 명	김**일 외 7건
주소 또는 거소	내역별첨
서 류 의 명 칭	2015년 08월 독촉 및 15년 10월 수시분 취득세 고지서
서 류 의 내 용	2015년 08월 독촉 및 15년 10월 수시분 취득세 고지서

위 서류를 귀하에서 송달하고자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로 우편발송 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미거주”, “이사”, “반송함장기방치” 및 “폐업” 등으로 반송처리 되어 송달이 불능인 바,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당초 납기 2015.10.31을 2015.11.31.일로 변경하여 공시하오니 납기 내 남동구청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15. 11.03.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취득세 2015.10월 수시분 및 2015.08월 독촉분 공시송달내역

연번	세목	개인(법인)명	납세자번호	납세번호	공고사유	세액합계
1	취득세	김**일	591004-*****	1015012015102510059737	수취인미거주	89,056,980
2	취득세	정**옥	710831-*****	1015012015102521059707	수취인미거주	1,203,070
3	취득세	박**현	761219-*****	1015012015102530059677	수취인미거주	275,570
4	취득세	김**수	640801-*****	1015012015102551059612	수취인미거주	1,167,890
5	취득세	김**수	650720-*****	1015012015102551059613	수취인미거주	1,167,880
6	취득세	기**건**주**회**	120111-*****	1015012015102650059829	수취인미거주	46,140
7	취득세	김**주	601023-*****	1015012015082530045469	수취인미거주	1,052,850
8	취득세	김**주	660219-*****	1015012015082530045470	수취인미거주	1,052,850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5-1684호

도 로 지 정 공 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의 위치를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5. 11. 3.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제 목 : 도로지정 공고
2. 지정근거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3. 공고기간 : 2015. 11. 3. ~ 2015. 12. 3.
4. 공고 내용

도로위치	지적 면적 (㎡)	도로 너비 (m)	도로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동의
				성 명	
서창동 8-2번지	1,000	4	9	한 * *	본인 동의

5. 공고방법 :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판
6. 관계도서 : 남동구청 도시관리과 비치(열람가능)
7. 기타사항 :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 남동구청 도시관리과(032-453-29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5-1685호

장기미반환 건설기계 공매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 및 「도로교통법」 제32조 위반으로 견인되어 반환통지 등 조치 후 1개월 이상 보관중인 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제34조의2 제3항, 「도로교통법」 제35조 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매각)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4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 - - - 다 음 - - - - -

1. 매각대상물건(건설기계) : 덤프트럭 1대(차량조회 목록참조)

2. 공매공고일정

가. 입찰신청 및 보증금 납부기간 : 2015년 11월 4일 - 2015년 11월 12일 24시
(입찰하고자 하는 분은 이 시간까지 입찰보증금을 입금하여야 하며,
미입금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입찰참여(입찰가 등록) 마감일시 : 2015년 11월 12일 24시

다. 공매결과 및 매각결정 공고일시 : 2015년 11월 13일 14시

※ 오토마트 인터넷공매(www.automart.co.kr) 해당 기관의 [결과조회]에 게시
라. 배분요구 종기일 : 2015. 11. 12.

※ 유찰시 이후 입찰일정은 개찰이후 별도 공고합니다.(다음 회차 입찰공고와
동시 가능)

※ 오토마트 전산 장애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이 연기 또는 중지될 수 있습니다.

※ 견인차량보관소 : 인천 연수구 능허대로124번길 26(인천폐차사업소)

※ 답사시간 : AM 10:00 ~ PM 17:00 (월~금) 공휴일 제외

3. 구매방법: 일반 전자상거래에 의한 경쟁 입찰방식 적용

4. 입찰참가 및 등록 방법

가. 인터넷을 통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www.automart.co.kr) 입찰방법은 입찰신청 또는 입찰참여에서 개인정보 입력 및 비밀번호 부여로 본인만 신청 가능하고 입찰가를 등록하여야만 입찰이 완료됩니다.

나. 마감기간 안에 입찰신청을 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입찰가격의 10/100 이상으로 직접 설정하고 설정한 보증금의 합계금액으로 입금합니다. (입찰보증금과 입찰가액은 한번 제출된 이후에는 금액을 변경하거나 취소가 불가합니다.)

다. 입찰 차량에 대한 입찰권한은 마감 기한 내에 아래 계좌에 입찰보증금을 입금해야 부여되며, 입금자 명의는 입찰등록자명의로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납부 기한내 미납시 또는 타인명의 입금시 입찰참가자격을 취소합니다.

☞ 입금계좌번호 : 신한은행 100-023-701983 예금주 : 남동구청

※ 은행 업무시간외(휴일 또는 오후 10시 ~ 오전 9시)에는 입금이 안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미입금은 입찰자 책임으로 미납처리 됩니다.

라. 매각발표후 유찰자의 입찰보증금과 입찰후 구매취소 사유가 발생할 경우의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를 제출시 등록한 환불계좌로 개찰일로부터 3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이자 없이 환불(계좌이체)되며, 별도의 송금수수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마. 낙찰된 자의 입찰보증금은 전액 계약보증금으로 전환되므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바. LPG승용(7인승미만) 자동차는 관계법령(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40조)에 의하여 승인된 자만이 입찰에 응할 수 있으므로 입찰시 취득가능한 자 명의로 입찰하여야 합니다.(만약 공동명의로 등록시 반드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장애인(국가유공자) 1인에 1대만 등록 가능하여 기존 장애인(국가유공자) LPG차량은 처분해야만 등록가능). 다만, 장애인(국가유공자) 소유기간이 5년이 지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5. 예정가격 : 감정에 의해 결정된 당해 회차 공매최저가격임

6. 낙찰자 결정기준

- 가.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입찰금액이 최고액인 입찰자.(단, 체납자 및 국세징수법 제66조 및 동법 제72조 규정에 의거 자격이 제한된 자가 아닌자)
- 나. 최고 입찰금액이 2인 이상 동일한 경우 입찰가의 선제출자를 낙찰자로 결정다. 입찰자는 입찰권한이(보증금 납부) 있는 자로서 단독입찰 가능
- 라. 공매재산이 공유물인 경우 국세징수법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공유자가 우선매수를 신고할 경우 최고가 입찰자에 상관없이 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이 있습니다.

7. 대금납부기한 :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 가. 낙찰자는 해당 납부기한까지 잔(대)금을 전액 완납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할 경우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입찰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지방세, 가산금 순으로 충당하며 해당 차량은 재공매 조치합니다.
- 나. 잔금 입금계좌는 입찰보증금 입금계좌와 상이할 수도 있으므로, 낙찰시 우리구 공매담당자에게 입금계좌를 확인 후 낙찰자 명의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8.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및 인도절차 등

- 가.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납부 후 우리 구로 잔금 납부를 통보해야 하며, 관련 서류 제출 및 매각대금을 완납한 낙찰자에 한하여 우리 구에서 해당 건설기계등록기관으로 권리이전등록을 촉탁하오니 낙찰자께서는 촉탁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권리이전 등록절차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 나. 낙찰 받은 차량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설정한 압류등기 이외의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등의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에 따르는 제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다. 번호판이 없는 차량은 낙찰자가 영치부서에서 번호판을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 라. 이전 후 1개월 이내 차량을 인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차량을 임의처분(재공매) 합니다.
- 마. 공매물건은 소유권 이전등록 후 차량보관소(인천폐차사업소)에서 인도되며 (관계서류 지참), 운반과 그 운반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 바. 정기검사기간을 경과한 차량을 경락받은 경우 이전등록 촉탁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정밀검사 해당 여부를 필히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만일, 이전등록 및 검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과태료 등을 부담하게 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건설기계등록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공매의 취소, 중지 및 매각결정취소

가. 매각진행 중 계약체결 전까지 차량소유자 또는 운전자 등이 제비용 모두를 납부하였거나 압류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공매중지 또는 매각결정취소를 하여야 하는 경우 또는 그러한 사실이 추후 확인될 경우 최고액 입찰자에게 매각결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다. 매각결정기일 전에 공매재산의 공유자가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최고입찰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 매수하겠다고 신고한 경우 공유자에게 매각결정 하고, 우선매수 신고한 공유자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 최고액의 입찰자에게 다시 매각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10. 공매물건의 하자책임 및 위험부담의 이전시기 등

가. 공매물건에 대한 제3자의 권리침해, 공부상의 하자나 행정상의 규제, 규격, 품질,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 하므로 차량점검서의 내용에 불구하고 입찰자 본인의 책임하에 공부확인 및 현지답사, 보관소 방문 등을 통해 반드시 직접 물건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매수대금 납부 후 그 매각물건에 생긴 소실, 훼손, 도난, 기능상 이상유무 등 위험은 그 물건의 이전 등록여부, 현실의 인도유무에 불구하고 낙찰자의 부담이므로 매수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매각 물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 주의사항

가. 공매에 따른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또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의 구입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소득공제 제외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매물건의 하자, 외관상태 및 주행거리 표기 등에 대하여 우리 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차량 보관소를 입찰자가 직접 방문하여 차량을 면밀히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하려는 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친권자(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인터넷 입찰마감 1영업일전까지 우리 구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매각결정은 매각결정기일에 하며, 낙찰자로 결정되더라도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매각결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 본 공고상의 내용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바. 공개매각에 따른 매각불능 차량에 대하여는 폐차처리 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건설과 건설행정팀(☎032-453-271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5-1692호

보상계획열람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 『능골지구 소2-2호선』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04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1. 사업의 개요**

- 가. 사 업 명 : 도시계획시설 『도로:능골지구 소2-2』
-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96-1번지 일원
- 다. 사 업 규 모 : L=358.0m, B=9.0m
- 라. 사 업 기 간 : 실시계획인가 시 부터 2016. 12. 31까지
- 마. 사업 시행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

2. 공고기간 : 2015. 11. 04. ~ 2015. 11. 18.

3. 보상시기 : 보상금액 산정 후 개별통지

4. 보상대상

- 가. 토 지 : 능골지구 소2-2호선(28필지, 3,631㎡)
- 나. 물 건 :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상물건 일체

5. 공시송달자

연번	구분	성명	주소	보상대상토지	사유	비고
1	소유자	이**	남동구 논현동 577 ***아파트***동***호	남동구 수산동 593-14,15,16,17번지	수취인불명	토지
2	소유자	이**	남구 학익동 645 ***아파트 **동***호	남동구 남촌동 77-2	수취인불명	자장물
3	소유자	손**	남동구 인주대로 857, ***동***호(만수동,**아파트)	남동구 남촌동 77-1, 77-2, 77-3번지	수취인불명	토지

6. 보상절차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에 의거
보상액을 산정하고 개별로 협의체결 후 현금보상

7. 기타사항 :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는 송달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도시관리과
(☎032-453-29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5-169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 “능골지구 소2-1호선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토지·지장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5. 11. 06.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2. 사업의종류 와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능골지구 소2-1호선)
 - 명 칭 : 능골지구 소2-1호선 도로개설공사
3.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322-3번지 일원
4. 보 상 시 기 : 2015. 11월 ~
5. 보상금지급처 : 남동구청 건설과
6. 보상대상
 - 토지보상 : 수산동 322-3번지 외 32
 - 지 장 물 : 도로개설 구간에 저촉되는 지장물에 한함.
7. 공시송달자

소유구분	성 명	소재지	대상토지 및 지장물소재지	사 유	비 고 (등기번호)
관계인	송*옥	남동구 수산동	산 57-1	주소불명	18996-8460-5474

8. 보상절차 : 보상에 필요한 서류 및 보상금액은 추후 개별 통지
9. 열람기간 : 2015. 11. 06 - 2015. 11. 20. (14일간)
10. 기타사항 : 토지조서 등은 남동구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열람하며 이의가 있으신 분은 건설과에 문의(☎032-453-2712) 또는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5-1700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과한 개발부담금 체납에 따른 공공기록정보 등록 예고 통지 및 체납액 납부독촉을 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11. 5.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공고기간 : 2015. 11. 5. ~ 2015. 11. 19.(15일간)

◇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공고의 내용

1. 처 분 의 제 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개발부담금 체납에 따른 공공기록정보 등록 예고 통지 및 체납액 납부독촉		
2. 당 사 자	성 명	허 만 채(61****-1*****)		
	주 소	경기도 시흥시 호현로 35(신천동)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개발부담금 체납에 따른 공공기록정보 등록 예고 ○ 개발부담금 체납액 : 57,161,060원(국고, 구고분 및 가산금 포함)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1조 (납부 독촉 및 가산금)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2조 (체납처분 등)		
6 문의사항	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부 서 명	토지정보과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전화번호	032)453-2483
7. 유 의 사 항		2015년 11월 19일까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토지정보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부담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귀하의 공공기록정보가 등록됨을 알려드립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공고 제2015-31호

제22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조례」 제3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거 제22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 제2차 정례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 일 시 : 2015년 11월 20일 (금) 10 : 00

■ 장 소 : 남동구의회 본회의장 (3층)

2015년 11월 04일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장 한민수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 공고 제2015-3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 11. 4.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통보[의정비심의위원회-1(2014.10.27.)]에 따른 2016년도 의정비 지급 기준을 명백히 규정하고,
- 현행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 한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고 있으나, 공소 제기된 후 구금되어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에는 월정수당을 제외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여 불합리한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을 개선하고자 함.

※ 의정활동비 : 의정활동 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비용

3. 주요 개정내용

- 2015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율(3.8%)을 반영하여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의

지급금액 조정(안 제3조의2 별표2)

- 2015년도 : 1,965,000원 ⇒ 2016년도 : 2,039,000원

○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여비 미지급근거 마련(안 제8조 신설)

○ 안 제8조 신설에 따른 제8조(준용)을 제9조로 변경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정팀)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23,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개정조례안 : 별첨

※ 이 규칙(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종관의원 발의)

의안 번호	1756
----------	------

발의년월일 : 2015년 11월 4일
발의자 : 문종관 의원
찬성자 : 최재현 의원 외 4명

☐ 제안이유

-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통보[의정비심의위원회-1(2014.10.27.)]에 따른 2016년도 의정비 지급 기준을 명백히 규정하고,
 - 현행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 한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고 있으나, 공소 제기된 후 구금되어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에는 월정수당을 제외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여 불합리한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을 개선하고자 함.
- ※ 의정활동비 : 의정활동 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비용

☐ 주요내용

- 2015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율(3.8%)을 반영하여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의 지급금액 조정(안 제3조의2 별표2)
 - 2015년도 : 1,965,000원 ⇒ 2016년도 : 2,039,000원
-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여비 미지급 근거 마련(안 제8조 신설)
- 안 제8조 신설에 따른 제8조(준용)을 제9조로 변경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 33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 33조, 제 34조』,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통보 공문, 인천시 군·구별 의정비 지급 기준 현황

남동구 조례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2]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제3조 제2항 관련)

지급기준	월정수당
지급액(1인기준)	2,039,000원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 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 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 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8조 (생 략)	제9조 (현행 제8조와 같음)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정비 심의위원회(2014.10.27.)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통보에 따른 월정수당 인상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

3. 미첨부 사유

조례개정에 따른 추가 비용(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됨

작성자 : 남동구의회 문종관 의원

[참고자료1]

지방자치법

[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4.1.>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14.12.23.] [대통령령 제25869호, 2014.12.23., 일부개정]

제33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10.8., 2014.6.3.>

1. 의정활동비 : 별표 4에 따른 금액
2. 여비 :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금액
3. 월정수당: 별표 7에 따른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 제34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는 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 지급기준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통·리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8.>
- ② 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위원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자와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의회의원·교육위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08.10.8.>
- ④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⑤ 심의회는 위원 위촉으로 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말까지 다음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제33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고, 그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다음 해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결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10.8., 2014.6.3.>
- ⑥ 심의회는 제5항의 금액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의 결정이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그 인상을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10.8., 2014.6.3.>
- ⑦ 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5항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회의 위원명단, 회의록 및 제5항 전단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8.>
- ⑨ 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8.10.8.>
- ⑩ 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10.8.>

[참고자료2]

* 창조경제의 시작 남동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구(區)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통보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5년도 남동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기에 통보합니다.

구 분	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 비
결정금액	연 : 36,780천원 (월 3,065천원)	연 : 13,200천원 (월 1,100천원)	연 : 23,580천원 (월 1,965천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제2호 별표5 및 별표6에 의한 지급범위 내

※ 2016년 ~ 2018년 월정수당 지급기준 : 지방공무원 보수인상을 범위內

붙임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 끝.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수신자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장

주무관 이훈

법무관/담당 노종혁

위원장 박재만

협조자

시행 의정비심의위원회 - 1 (2014.10.27) 접수

우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남동구청)

/ <http://www.namdong.go.kr>

전화번호

팩스번호

/

/ 대국민 공개

개방·공유·소통·협력으로 남동구가 「정부3.0」을 선도하겠습니다.

/허훈/기획예산실/2014/10/27 16:33:51

인천광역시남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2014년 10월 6일

구 분		결정금액	비 고
결정금액 (여비제외)		36,780천원	
지 급 장 정 결 정 항 목	월정수당	연 : 23,580천원 (월 : 1,965천원)	○ 공무원보수인상율 범위내 결정
	의 활 등 비	연 : 13,200천원 (월 : 1,100천원)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 별표 4에 따른 금액
	여 비	- 아래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금액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금액

<국내여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 별표 5)>

(단위 : 원)

구 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현 지 교통비	숙박비	식비
구(區) 의원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20,000	46,000	25,000

<국외여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 별표 6)>

(단위 : 미불화)

구 분		항공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 비 금		
						15일미만	15일이상 30일미만	30일이상
구	의 장	1등정액	35	166	107	140	170	195
	의 원	2등정액	30	145	81	130	155	180

[참고자료3]

인천시 군·구별 의정비 지급기준 현황

(단위 : 원)

군·구	의정활동비 (월/1인기준)	월정수당(월/ 1인기준)			비고
		2015년 현재	2016년	2017~2018년	
인천시	1,500,000	3,459,000	3,459,000 (동결)	동결	
중 구	1,100,000	1,899,000	1,899,000 (동결)	- 2017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을 범위 내 - 2018년 동결	
동 구	1,100,000	1,683,330	1,747,290 (3.8% 인상)	- 2017~2018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을 적용	
남 구	1,100,000	1,910,000	1,982,580 (3.8% 인상)	- 2017~2018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을 반영	
연수구	1,100,000	1,857,500	1,928,000 (3.8% 인상)	- 2017~2018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을 적용	
남동구	1,100,000	1,965,000	2,039,000 (3.8% 인상)	- 2017~2018년 공무원 보수인상을 범위 내	
부평구	1,100,000	1,927,500	1,927,500 (동결)	- 2017년 공무원 보수인상을 적용 - 2018년 동결	
계양구	1,100,000	1,778,900	1,778,900 (동결)	- 2017년 공무원 보수인상을 범위 내 - 2018년 동결	
서 구	1,100,000	1,949,500	1,949,500 (동결)	- 2017년 공무원 보수인상을 적용 - 2018년 동결	
강화군	1,100,000	1,634,820	1,634,820 (동결)	- 2017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을 적용 - 2018년 동결	
옹진군	1,100,000	1,459,395	1,514,852 (3.8% 인상)	- 2017~2018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을 적용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 공고 제2015-3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 11. 05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개정이유

- 전자회의록 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회의록 유인·배부와 관련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 및 시스템 활용 방안을 극대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발언자의 회의록 자구의 정정요구 기산 시점 경우의 다변화
(안 제47조제1항)
 - 인터넷 게재 또는 전자매체(CD-ROM 등)가 배부된 날 추가
- 전자매체(CD-ROM 등)를 활용한 회의록 배부 대행방법 신설
(안 제48조 제6항)
 - 의원에게 배부하는 회의록은 전자매체(CD-ROM 등)를 활용하여 배부

4. 의견제출

위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11월 1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장(참조 : 의사팀)
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2,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별첨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1760
----------	------

제출년월일 : 2015년 11월 4일

발 의 자 : 임춘원 의원

찬 성 자 : 민창기의원, 문종관의원

최재현의원, 임순애의원, 조영규의원

☐ 제안이유

- 전자회의록 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회의록 유인·배부와 관련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 및 시스템 활용 방안을 극대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발언자의 회의록 자구의 정정요구 기산 시점 경우의 다변화
(안 제47조제1항)
 - 인터넷 게재 또는 전자매체(CD-ROM 등) 가 배부된 날 추가
- 전자매체(CD-ROM 등)를 활용한 회의록 배부 대행방법 신설
(안 제48조 제6항)
 - 의원에게 배부하는 회의록은 전자매체(CD-ROM 등)를 활용하여 배부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71조(회의규칙)
-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조례」 제59조(준용규정)
- 인천광역시·구의회 회의 규칙

남동구의회 규칙 제1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중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를 “회의록이 인터넷에 게재 또는 전자매체(CD-ROM 등) 및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로 한다.

제48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의원에게 배부되는 회의록은 전자매체(CD-ROM 등)로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7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u>회의록이 배부된 날의</u>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② (생략)	제47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 ----- <u>회의록이 인터넷에 게재 또는 전자매체(CD-ROM 등) 및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u> ----- -----. ② (현행과 같음)
제48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⑤ (생략) <신 설>	제48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u>의원에게 배부되는 회의록은 전자매체(CD-ROM 등)로 할 수 있다.</u>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제71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15.07.31 조례 제1276호]

제5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 공고 제2015-3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 11. 5.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

2. 제정이유

- 2014. 5. 2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이 시행되었고,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선정한 표준안에 맞추어 의회기 및 의원 배지의 모양을 통일시키고 한글을 사용함으로써 보다 신뢰받고 친근한 의회의 이미지를 정립하고자 함.
- 아울러, 우리 구에서 별도로 제정되어 운영되었던 「인천광역시남동구 의회의원배지에관한규칙」과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기에관한규정」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가. 규칙 제정 목적 (안 제1조)
- 나. 회장·기 및 배지의 규격(안 제2조)
- 다. 회장사용의 제한(제4조)

라. 의회기의 관리(안 제5조)

마. 배지의 패용(안 제6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정팀)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22,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제정조례안 : 별첨

※ 이 규칙(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휘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
(임순애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758
----------	------

발의년월일 : 2015년 11월 4일

발 의 자 : 임순애 의원

찬 성 자 : 임춘원 의원외 4명

☐ 제정이유

- 2014. 5. 2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이 시행되었고,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선정한 표준안에 맞추어 의회기 및 의원배지의 모양을 통일시키고 한글을 사용함으로써 보다 신뢰받고 친근한 의회 이미지를 정립하고자 함.
- 아울러, 우리 구에서 별도로 제정되어 운영되었던 「인천광역시남동구 의회의원배지에관한규칙」과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기에관한규정」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규칙 제정 목적 (안 제1조)
- 나. 휘장·기 및 배지의 규격(안 제2조)
- 다. 휘장사용의 제한(제4조)
- 라. 의회기의 관리(안 제5조)
- 마. 배지의 패용(안 제6조)

☐ 본 문 : “별첨”

☐ 참 고 자 료

- 가. 관련법규 :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 나.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의자료 1부.

남동구의회 규칙 제 2015- 1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휘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를 상징하는 휘장의 규격 및 용도, 휘장을 표지하여 만드는 의회기와 의회의원이 패용하는 배지의 규격과 모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격) ①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휘장의 문양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② 의회기는 휘장을 표지하며 그 모형과 규격, 재료는 별표 2와 같다.

③ 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이 패용하는 배지는 휘장의 모형으로 하되 그 모형 및 색상, 규격, 재료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3조(휘장의 사용) 휘장은 위엄과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휘장사용의 제한) ① 의회 휘장도안(이하“휘장도안”이라 한다)은 개인영리 또는 개인 홍보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휘장도안을 이용한 상품 등을 제작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원이 명함, 인쇄물 등에 휘장도안을 표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위, 전화번호(의회, 자택, 개인사무실을 포함한다), 사무실 또는 거주지의 주소 이외의 사항이나 의원직 이외의 겸직사항을 함께 표기할 수 없다.

제5조(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금실을 부착한다.

②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 오른쪽에 게양한다.

③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하는 방식으로 한다.

④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방법은 「대한민국국기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6조(배지의 패용 등) ① 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② 배지는 의원 외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 또는 교부하지 못하며 분실이나 훼손한 때에는 그 사유를 의장에게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배지에관한규칙」을 폐지한다

[별표 1]

회 장 모 형 도(제2조제1항 관련)

1. 외 형 : 무궁화형상 입체형
2. 중 앙 : 원형 바탕에 “의회” 자 표기
3. 색 상 : 무궁화 형상 및 “의회”자는 금색, 중앙의 원형 내 바탕색은 백색으로 한다. 다만, 회장의 도안을 이용할 때에는 바닥색의 여건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

[별표 2]

의 회 기 모 형 도(제2조제2항 관련)

1. 모형 및 규격



(실내용)

가로 135cm, 세로 90cm
 휘장표식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2분의 1

무궁화, 원, 글씨(금색)
 원형 내(백색)
 의회기 바탕(청색)



(옥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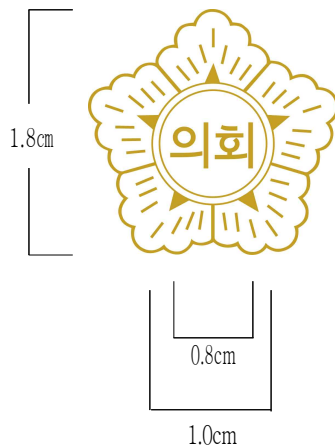
가로 210cm, 세로 140cm
 휘장표식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2분의 1

무궁화, 원, 글씨(금색)
 원형 내(백색)
 의회기 바탕(청색)

[별표 3]

배 지 모 형 도(제2조제3항 관련)

1. 모형 및 색상



2. 규격

모 형 내 용		규 격
무궁화형	5지	1.8cm
무궁화원자형	○	1.0cm
글 자 형	서울남산체	0.8cm

가. 휘장 직경 1.8cm

나. 휘장 바탕 및 ‘의회’자는 황금색

다. 원형 내 백색

3. 재료 및 방법

가. 은(동)으로 하되, 모형은 입체적으로 제작

나. 색상 중 ‘금색’은 황금색으로 도금

[참고자료1]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를 상징하는 국회기에 관한 사항과 국회배지의 양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회기의 규격 등) 국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깃발의 바탕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율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0센티미터로 한다.
2. 깃발 중앙에는 속에 "국회"자가 새겨진 무궁화 표지(標識)를 배치한다.
3. 표지의 지름은 깃발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4. 표지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며 원 안의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
5. 깃봉은 높이가 15센티미터, 변이 2센티미터와 4센티미터인 4각 뿔 모양으로 한다. 다만, 국기봉을 겸용할 수 있다.
6. 국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국회기의 깃면 둘레에는 금색실을 달 수 있다.

제3조(게양) ① 국회기는 국회건물 및 국회의장집무실에 게양한다.

- ② 국회기를 국기와 함께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쪽에 게양한다.
- ③ 국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같이 게양하지 아니한다.

제4조(관리) 국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국회기에 대한 예의) 국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6조(배지 구분) ① 국회배지는 국회의원 배지와 국회공무원 배지로 구분한다.

- ② 국회공무원 배지의 발급 대상, 양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장이 정한다.

제7조(배지 양식) ① 국회의원 배지 양식은 별표 2와 같다.

- ② 국회의원 배지는 뒷면에 국회 대수와 번호를 조각하며 번호는 국회의원 등록 순으로 한다.

제8조(배지 교부) ① 국회의원 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배지를 재교부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

제9조(배지 패용 요령) 배지는 왼쪽 옷깃에 단다.

제10조(차량표지) ① 국회의장이 승차한 차량에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 ② 차량표지판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3과 같다.

[참고자료2]

第184次 市·道代表會議

會 議 書 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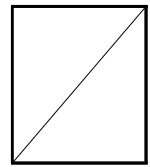
- 일 시 : 2015. 4. 21.(화) 11:00
- 장 소 : 전남 신안군 엘도라도리조트



全國市郡自治區議會議長協議會

의안번호	제 314 호
의 결	2015. 4. 21.
년 월 일	(제184차)

의결 사항



시·군·구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의 한글화 채택의 건

제 출 자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경기도대표회장 박권종
제출년월일	2015. 4. 2.

시·군·구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의 한글화 채택의 건

의안 번호	314
----------	-----

제안일자 : 2015. 4. 2.

제 안 자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경기도대표회장 박권중

1. 제안 이유

- 시·군·구의회 의회기 및 의원 배지가 한자로 사용되고 있어 의회를 찾는 학생들과 외국인이 배지 한자를 잘 모르고, 의원 공무국외 여행 시에는 한글로 된 의원 배지를 사용함으로써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제안하게 되었음.

2. 주요내용

- 의회기 및 배지 한자 도안을 한글로 변경
 - “議” → “의회”
- 그간 경기도 오산시의회 추진사항
 - 제20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오산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결 / 원안가결) (2015. 1. 30.)
 - 경기도시군의회남부권협의회 제16차 정례회 심의의결 / 원안가결 (2015. 2. 5.)

3. 참고사항

- 의회기 및 배지 개정 도안 : 별지1
- 국회의원 및 타 시·군·구의회 의원 배지 현황 : 별지2
- 타 시·군·구의회 의원 배지 한글 변경 현황 : 별지3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 공고 제2015-35호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기에관한규정 폐지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기에관한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 11. 5.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기에관한규정 폐지규정(안)
2. 개정이유
 -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제정에 따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기에관한규정을 폐지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정팀)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22,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5. 개정조례안 : 별첨

※ 이 규칙(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기예관한규정 폐지규정(안)

(민 창 기 의 원 발 의)

의안 번호	1759
----------	------

발의년월일 : 2015년 11월 4일

발 의 자 : 민창기 의원

찬 성 자 : 임춘원 의원외 4명

☐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휘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제정에 따라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기예관한규정을 폐지함.

☐ 본 문 : “별첨”

남동구 규칙 제 2015- 17호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기에관한규정 폐지규정(안)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기에관한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공고 제2015-74호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내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처분을 실시하고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2. 직 권 말 소 일 자 : 2015. 10. 20.
3. 처분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4. 공 고 기 간 : 2015. 10. 30. ~ 2015. 11. 13. (15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직권말소일
일반 음식점	1998-0199436	캐치큐 (간석점)	양*선	남동구 경인로 611 (간석동)	사업자등록 폐업	2002.11.14.	2015.10.20.
	1998-0199252	찬스	홍*희	남동구 간석동 302번지 7호		2004.04.10.	
	2008-0199698	에이스	한*정	남동구 남동대로915번길 22 (간석동)		2013.12.31.	
	1992-0199303	상원	추*자	남동구예술로172번길 41 (구월동)		2012.09.30.	
	2003-0200086	명인만두 구월점	김*주	남동구 구월로 280 (구월동)		2014.03.04.	

6. 고지사항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정당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남동구청장) 또는 재결청(인천광역시장)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위생팀
☎ (032)453-2623

2015. 10. 30.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보 건 소 장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공고 제2015-75호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내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처분을 실시하고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2. 직 권 말 소 일 자 : 2015. 10. 21.
3. 처분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4. 공 고 기 간 : 2015. 11. 02. ~ 2015. 11. 16. (15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직권말소일
일반 음식점	2001-0199337	김이랑밥이랑	최*희	논곡로91번길 5-7 (논현동)	사업자등록 폐업	2015.05.10.	2015.10.21.

6. 고지사항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정당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남동구청장) 또는 재결청(인천광역시장)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위생팀

☎ (032)453-2626

2015. 11. 02.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보 건 소 장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공고 제2015-76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

영업시설물을 멸실하고 6개월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아래 업소에 대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을 실시하고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영업소 폐쇄
2. 처분일자 : 2015.10.22.
3. 처분근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2조(영업허가취소 등)
4. 공고기간 : 2015. 11. 04 ~ 2015. 11. 18 (15일간)
5. 처분업소

업종	신고번호	업소명	영업주	소재지	위반내용	폐쇄일자
건강기능식품판매업	2012-0199073	은이네 다이어트	김*복	장아산로 175 (서창동)	영업시설물 전부멸실 및 사업자폐업	2015.10.22.

6. 고지사항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정당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남동구청장) 또는 재결청(인천광역시시장)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위생팀

☎ (032)453-2623

2015. 11. 04.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보 건 소 장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공고 제2015-77호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내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처분을 실시하고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2. 직 권 말 소 일 자 : 2015. 10. 22.
3. 처분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4. 공 고 기 간 : 2015. 11. 04. ~ 2015. 11. 18. (15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직권말소일
일반 음식점	2007-0199580	은하수	장*미	남동구 남동대로921번길 29 (간석동)	사업자등록 폐업	2012.04.18.	2015.10.22.
	2010-0200011	핑거푸드	김*란	남동구 예술로 198 (구월동)		2014.05.31.	
	2011-0199470	다물낙지 전문점	이*현	남동구 장아산로 186 (서창동)		2013.06.30.	

6. 고지사항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정당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남동구청장) 또는 재결청(인천광역시시장)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위생팀 ☎ (032)453-2623

2015. 11. 04.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보 건 소 장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공고 제2015-78호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2. 공 고 기 간: 2015. 11. 04. ~ 2015. 11. 18. (15일간)
3. 대상업소 내역

업종	업소명	영업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용	법적근거
일반 음식점	동대문곱창	박*미	남동구 복개동로 74 (만수동)	2014년도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식품위생법제 41조 및 101조
	리밤에가요리믹스	김*미	남동구 인하로489번길 28 (구월동)		
	또순이막걸리	김*연	남동구 구월남로 317-2 (구월동)		

4. 고지사항

- 의견제출기한 : 2015.11.30.까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동법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감경)에 의거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1급~3급까지), 국가유공자(1급~3급까지)의 상이등급판정자,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내에 과태료감경(납부금액의 50%)을 위한 관련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동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의견제출 기한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시에는 납부금액의 20%가 감경되며,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처분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5. 기 타 사 항 : 상기 공고와 관련하여 의견제출 및 고지서 발급 등에 대한 문의 사항은 식품위생과 식품위생팀(032-453-26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 11. 04.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보 건 소 장